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박 중 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박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이 시급하여 교장 임기제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은 상당히 희석된 상황입니다.

또한, 교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연속적이고 일반적인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교장이 1개 학교에 장기 재직할 경우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둘째, 현행법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 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시

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